

#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투자자원 확보 방안

손 희 준 | 청주대학교 교수

이 상 범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 I. 서론

지난 참여정부는 수도권으로의 집중과 중앙집권이 비수도권으로 대변되는 지방의 공동화와 정체를 야기시켰다고 인식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방분권정책과 지방분산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사회계층간 격차로까지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요인은 행정구역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이 지역간의 사업 중복 및 한정된 국가자원에 대한 소모적 경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한 대립 등으로 국가통합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정부는 광역경제권 개발전략을 천명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세계경제는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경쟁의 주체가 국가단위에서 지역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대도시와 이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의 지역은 국가를 대신하는 새로운 경쟁주체로 세계무대에 등장하고 있다(Scott et al., 1999).

이처럼 세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지역들의 노력들이 가중되는 가운데, 동북아 지역에서도 6대 광역경제권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즉, 중국의 주강경제권(홍콩 등), 장강경제권(상해·소주 등), 발해만경제권(북경·천진 등)의 3곳이 있으며, 일본에는 관동경제권(동경 등)과 관서경제권

등 2곳이 있고, 우리나라는 겨우 수도권 경제권(서울 등) 1곳이 있다(부울경, 2007).

이에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지역간 경쟁에서 살아남고 기존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글로벌 광역경제권으로 5+2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창조적 광역발전 비전'을 발표하였다. 이는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의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도와 제주도의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여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보유 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경제·산업의 중심지역으로서 인구 500만 정도의 광역경제권 개발을 제시한 것이다(조선일보, 2008. 1. 25일자).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원스톱(one-stop) 행정을 지원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지역에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할 예정이며, 신성장 동력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제항만, 국제공항 등 핵심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수위는 광역경제권 개발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리기 위해 법적·재정적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하였다. 즉,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한 「(가칭)지역간 협력 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편하여 광역경제권 사업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대부분 자율편성 사업으로 국가지원이 확정된 기존 사업이 광역경제권 사업에 다시 포함될 경우 투자재원이 중복되거나 상충될 우려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가용재원 역시 기간재원(주세 등)의 안정성 문제가 있으며 광역경제권 개발의 재원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광역경제권개발 구상에 대한 개념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존의 가용재원 현황과 새로운 투자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 II. 광역경제권의 개념과 구상

### 1. 개념 및 권역설정의 기준

광역경제권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몇 개의 행정구역 또는 광역권을 묶는 개념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면서 하나의 자립적인 경제단위로서 기능할 수 있는 지

역으로 정의되고 있다(부울경 2007)<sup>1)</sup>. 부연하면, 광역경제권은 권역의 공간적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로써 통근권이나 생활권 같은 기초적 경제활동보다는 산업의 다양성과 인재의 양성, 수출과 외자유치 등과 같은 경제활동의 광역적 상호보완성이 강조되는 경제권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동우 2006).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새 정부는 인구 규모, 인프라,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고려하여 광역경제권역을 설정하여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확보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경제권은 영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인구 500만 정도로 통합하여 소비시장 관점에서 국제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경제권은 정책추진의 효율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공간적 인접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간 연계사업을 활성화해 광역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방광역권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중복투자, 행정구역별 독자성에 치우친 비효율적 경쟁을 방지하는 것이 광역경제권 설정의 기준이 된다.

## 2. 광역경제권의 권역 및 내용

5+2 광역경제권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충청권(대전, 충남·북도), 호남권(광주, 전남·북도), 대경권(대구, 경북도),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도) 등의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도와 제주도의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제안하였다((그림 1) 참조).

추진기구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내에 “광역경제권활성화추진단”을 설치하여 중앙정부가 광역경제권간 정책의 기획·조정·모니터링하며, 관련 중앙부처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이 부처간 역할 분담을 할 예정이다. 광역경제권별 지역에서는 전담기구로 자율형 지역본부체제인 “광역경제권 본부”가 설립·운용될 예정이다.

광역경제권은 자율적 지역발전 효과의 극대화 및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통제·간섭으로부터 탈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스스로의 협력·조정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시·도의 자체 인력으로 운용하며 기획조정권과 재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대구경북연구원, 2008).

1) 오마에 겐이치는 ‘국가의 종말(1996)’에서 지역국가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지역국가를 규정하는 척도는 정치적 국경성이 아니라 그것들이 현재의 세계와 경제에서 자연적인 사업단위가 되기에 적절한 규모를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부 이태리, 샌디에고 및 티후아나, 홍콩 및 남부중국, 부산과 후쿠오카 및 류슈, 도쿄와 주변지역, 오사카와 간사이 지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요 기능은 광역경제권 전략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도 간 상호협약 체결, 광역경제권내의 지역간 정책 및 사업 조정, 사업의 성과관리, 권역내 시·도간 지원금 배분 등으로 구상하고 있다. 또한 재원과 관련해서 광역경제권개발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및 광역발전포괄보조금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과 관련 부처 보조금의 일부 및 지방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 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광역경제권은 광역경제권 특별회계의 일부를 광역발전포괄보조금으로 운용하여 세출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유사·중복투자의 비효율을 지역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것이며, 광역경제권 특별회계의 광역경제권간 배분 시에는 협력사업 내용, 재정자립도 등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권역간 차등 배분을 고려하고 있다.

(그림 1) 5+2 광역경제권



〈표 1〉 광역경제권별 경제지표(2005년 현재)

구 분	면 적 (km <sup>2</sup> )	인 구 (인)	지역내총생산 (억원)	제조업고용 (인)	내국세징수액 (억원)	지방세징수액 (억원)
전 국	99,646 (100.0)	47,278,951 (100.0)	8,178,118 (100.0)	2,865,549 (100.0)	782,119 (100.0)	359,773 (100.0)
수도권	11,730 (11.8)	22,766,850 (48.2)	3,869,896 (47.3)	1,346,360 (47.0)	562,000 (71.9)	207,201 (57.6)
충청권	16,572 (16.6)	4,792,804 (10.1)	916,145 (11.2)	316,131 (11.0)	55,675 (7.1)	31,672 (8.8)
호남권	20,629 (20.7)	5,021,548 (10.6)	835,042 (10.2)	202,357 (7.1)	34,848 (4.5)	25,301 (7.0)
대경권	19,910 (20.0)	5,072,188 (10.7)	844,774 (10.3)	347,105 (12.1)	45,898 (5.9)	31,064 (8.6)
동남권	12,342 (12.4)	7,629,155 (16.1)	1,411,808 (17.3)	616,119 (21.5)	66,968 (8.6)	51,630 (14.4)
강원권	16,613 (16.7)	1,464,559 (3.1)	223,813 (2.7)	32,882 (1.1)	13,280 (1.7)	8,893 (2.5)
제주권	1,848 (1.9)	531,887 (1.1)	76,638 (0.9)	4,595 (0.2)	3,446 (0.4)	4,011 (1.1)

자료 : 김은경(2008: 83).

### 3. 광역경제권의 발전전략 구상

신정부는 창조적 광역발전 구도를 위하여「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지역간 공동발전」을 비전으로 하고 그 기초로서 첫째, 행정구역 초월 및 창조적 지역협력, 둘째, 특성화 발전을 통한 성장, 셋째, 광역권 신성장동력 구축, 넷째, 분권과 통합 등 4가지를 두고 있다. 이러한 기초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① 광역적 연계사업 활성화, ② 규제개혁·시장친화적 지역경제, ③ 광역권 기간인프라, ④ 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화, ⑤ 수도권·지방의 공동발전, ⑥ 분권·통합적 행·재정제도 등 여섯 가지의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강원발전연구원 2008). 이러한 발전전략의 내용을 좀더 상세히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광역경제권의 특성화사업 중점 추진전략

광역적 유망 주력산업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간 핵심유망산업벨트, 광역클러스터, 일자리 맞춤형 공동산학 협력 등 (예: 충청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남해안조선산업벨트 등)</li> <li>- 해외기업 및 대학공동유치, 권역내 기관들의 컨소시엄, 기술·생산·판매 등의 전략적 제휴</li> </ul>
공간구조 개선 공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내 상호조정을 통한 지역특성화 협력사업</li> </ul>
광역기반시설 공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공동투자 및 공동시스템 구축 (예: 서울시의 버스경영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광역경제권 단위로 확대 실시)</li> </ul>
권역중심도시 육성 등 도농재생 및 생활환경 선진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사업</li> <li>- 농촌재생사업</li> <li>- 중심도시 등의 일류 의료·교육 등 선진환경 조성</li> </ul>
공공디자인·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컨텐츠를 특성화한 문화관광 사업 공동추진</li> <li>- 지역특성을 가미한 미적·자연적 가치내재형 공동사업</li> </ul>
국제교류 공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경제권과 해외경제권과의 글로벌 협력사업</li> <li>- 지역간 해외진출 공동사업</li> </ul>

첫째,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이다. 광역경제권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사업을 활성화해, 광역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방광역권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간 연계사업을 광역유형, 초광역유형, 기초유형 등 유형별로 나누고, 유형별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한 사업을 선별 추진하여 권역별 특성화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은 특히 지방의 선도기반이 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거점의 조성이 중점 사항이다.

둘째, 규제개혁 및 시장친화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촉진이다. 이는 광역경제권 투자활성화의 여건조성을 위해 규제완화 등 수요자 중심과 기업맞춤형 지원시스템의 전국적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및 윈스톱 행정지원 등 일자리 맞춤형 산학링크 계약제 활성화, 지방으로의 민자유치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셋째, 광역경제권의 기간 인프라 확충이다. 이를 위하여 신성장 동력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제항만, 국제공항 등 핵심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세부사항으로 광역경제권 내외의 고속도로 건설, 광역경제권 간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조기확충, 국제항만의 전략적 경쟁력 강화와 제3세대 항만의 기반구축,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진출·입 관문인 국제공항 확

충 등이 제시되고 있다.

넷째, 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로의 전환이다. 이는 교통망의 발달, 관광여가 수요의 확대, 청정 및 장수 건강지역을 선호하는 국민의식 변화를 계기로 만성적 낙후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여 국토 신발전지대로 전환하는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만성적인 6대 낙후지역<sup>2)</sup>을 대상으로 지역별 “선택과 집중”에 의한 발전방식을 채택하여 지역경쟁력 창조와 개발효과 확산을 유발하도록 한다. 특히 만성적 6대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화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관광레저 여가특구, 도농연계 전원마을과 농산물 가공산업 등 ‘신발전 패키지사업’을 추진하고 핵심규제 개혁 및 정부지원 모델을 창안하고 정책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다섯째,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관계를 해소하고 상호발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광역경제권간 연계투자 및 제도적 여건 조성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산업연계체제 강화로 지역투자의 지역간·산업간 상호 파급효과를 확대 하며, ‘수도권 대 지방’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개념으로 공동발전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이다. 이는 광역경제권 발전을 지역간 협력과 통합적 조정, 실질적 분권화 체제 속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및 광역발전 포괄보조금 제도 시행, 일자리 창출목표의 제시 등 성과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광역경제권별 자율형 지역본부체제를 운영하여 기획조정권과 재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내에 ‘광역경제권활성화추진단’을 운영하고, 광역경제권 정책관련 중앙부처간 역할분담을 통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가칭 “지역간 협력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광역경제권특별회계와 포괄보조금,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광역권별 자율형 지역본부 추진체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려 하고 있다.

한편 지역발전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의 상설협의체 운영으로 국정파트너십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주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 지방분권이 내재된 광역경제권 발전 촉진방안으로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교부세의 확대, 지방조세권의 확충, 지역공동세의 확대,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 교육자치 등의 자치행정 구현 방안이 제시되었다.

2) 6대 낙후지역은 ① 남북한 접경지역, ② 강원폐광지역 일대, ③ 경북 북부지역 일대, ④ 전북 등 덕유산 지역일대, ④ 경남 서부지역 등 지리산 지역 일대, ④ 도서지역(島嶼地域)권 일대 이다.

### Ⅲ. 가용 투자재원의 검토

#### 1.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추진방향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광역경제권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광역경제권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및 광역발전포괄보조금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편과 관련 부처 보조금 일부 및 지방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은 현행 국가사업, 국가 및 지역공동사업, 지역사업 등이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는 기존의 균특회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재분류하여 국가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광역사업은 기존 균특회계 내에서 국가 및 지역공동사업 중, 시·도간 연계필요사업과 신규발굴사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 재원의 일부는 이명박 정부가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의 19.24%에서 2% 이상 인상할 것으로 공약하였으며, 만약 인상이 가능하다면 인상분의 재원이 광역권 특별회계 재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신규재원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세 신설을 통한 재원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부담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결국 광역경제권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은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입금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되, 향후 새로운 재원 조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05년 기존의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참여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각 중앙부처가 7개의 회계를 통해 분산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관련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사업예산을 패키지 방식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계획지향적 체계이다. 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기초로 5년 단위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년도 예산 편성과 연계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각각 지역개발계정과 지역혁신계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개

발계정은 주세의 80%, 일반회계 전입금, 그린벨트훼손부담금 등으로 구성하고, 지역혁신계정의 세입은 주세의 20%, 통신사업특별회계 전입금, 기반시설부담금의 20%, 기타 전입금,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2006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2007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이 추가되었다.

〈표 3〉 균특회계의 계정별 운영 및 자원배분 체계

편성방식		계정	지역개발계정	지역혁신계정	제주계정
지자체 자율편성	시·도		시·도 자율편성사업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자율편성사업 균형발전기반사업 특별지방행정기관 경비
	시·군·구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	-	
국가직접편성			기타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국가직접편성사업	국가직접편성사업

자료 : 기획예산처(2007).

2007년도말 현재 지역개발계정은 시·도자율편성사업, 균형발전기반사업 및 국가직접편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도자율편성사업은 균특회계 내에서 지방의 자율성 제고를 핵심적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SOC, 농림 및 문화관광분야의 62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공식에 의해서 산정한 한도액 내에서 시·도가 이 사업들 가운데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는 자율편성예산 총액한도 내에서 본청 및 관할 시·군·구에 예산을 배분한다. 이때 시·도마다 다른 배분방식을 채택하도록 허용되어 있어서 시·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예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균형발전기반사업은 도서·오지 등 낙후지역개발사업으로 도서종합개발, 소도읍 육성, 신활력 지역지원 등 10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2008년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시·군·구별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국가직접사업은 종래의 기타사업으로 위협도로 구조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지원사업 등 12개를 포함하고 있으며, 예산신청 및 편성절차는 다른 회계의 국고보조사업과 동일하다. 국가균형발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업으로 이는 도입초기 5조원의 자원조성을 위하여 세입에 포함된 측면이 있다. 최근 균특회계의 예산내역을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균특회계의 예산구조

(단위 : 억원)

구 분	2006예산	2007예산	증 감	
			금액	비율(%)
합 계	59,067	67,629	5,558	21.0
지역개발계정	45,127	49,115	3,988	8.7
· 지자체 자율편성사업(a)	27,921	28,817	896	3.2
· 균형발전기반지원	10,363	10,723	360	3.5
– 지자체 자율편성(b)	–	9,804	9,804	순증
– 국가직접	10,363	919	△9,444	△91.1
· 국가직접편성(재해, GB등)	6,842	9,575	2,733	40.0
지역혁신계정	13,940	15,338	1,398	10.1
· 지자체 자율편성(c)	–	5,288	5,288	순증
· 국가직접편성	13,940	10,050	△3,890	△27.9
제주계정(2007년 신설)	3,304	3,476	172	2.2
· 균특사업내	1,711	1,752	41	2.4
· 균특사업외	1,593	1,752	132	8.2

주: 1) 2007년부터 균형발전기반 신규사업, 지역혁신계정중 16개 사업의 계속사업을 지자체 자율편성으로 전환  
 2) 자율편성: 2006년 27,921억원→ 2007년 45,240억원

2008년도 현재 지역혁신계정은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국가 직접편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도자율편성사업은 지방 연구중심대학 육성,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직접편성사업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등 17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혁신계정은 지역(혹은 대학, 연구소 등)간의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지역(혹은 대학, 연구소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혁신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낙후지역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통하여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개발계정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즉, 개발계정이 지역간 격차 완화라는 형평성을 추구한다면, 혁신계정은 가장 능력이 뛰어난 지역(혹은 대학, 연구소 등)에의 자금집중을 통하여 효율성을 추구한다.

제주계정은 2007년도에 신설되어 2008년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편성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과 국가직접편성으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은 기존의 자율편성사업 64개, 균형발전기반사업 3개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28개 사업을 포함하고, 국가직접편성사업은 하천재해예방, 재해위험지구정비, 소하천정비 및 창업보육센터건립지원 등 4개 사업을 포함한다.

### 3. 지방재정에서의 가용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가능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구조를 파악하여 설정할 수 있다. 우선 지방의 예산편성 순위는 경상비, 보조사업(국고, 시·도), 자체사업 등의 순으로 편성되고 있다. 이중 광역경제권 개발과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자치단체 재정력으로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자체사업 예산이 있다. 즉, 광역경제권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서 투자비의 증대에서 찾아야 하며 이는 곧 투자적 경비의 형성과 증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의사결정은 경비지출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가 위임하는 사업으로서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표 5〉 지방자치단체「자체사업 예산」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당초)
총 예산	97.5	98.9	107.1	115.5	112.0
자체사업 예산	23.8	28.6	32.6	32.9	29.8
비 율	24.5%	28.9%	30.5%	28.5%	26.6%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예산은 2007년 26.6%이지만, 2008년 국고보조금이 약 900여개의 2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고보조금과 함께 자치단체의 매칭비 부담도 증가하면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원규모는 오히려 감소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국가-광역-기초단체간의 자원분담비율은 일관성 있는 기준과 원칙 없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체사업 예산을 가용재원으로 할 경우 광역개발 사업의 성격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 유형별로 기준부담률을 총체적으로 재검토 필요가 있다.

## IV. 광역경제권의 투자자원 확보방안

### 1. 기본방향

광역경제권 개발의 투자자원 확보를 위한 기본 방향은 가장 먼저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의 성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파급효과가 결정될 것이며, 이에 의해 해당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간 논의되어 왔던 자치단체간의 협조와 협력이 가능하리라고 예측되는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한표환 외, 2002).

〈표 6〉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유형별 대상사업

유 형 별	대 상 사 업	비 고
협오시설 설치·운영	음식물쓰레기처리, 폐기물처리(소각장, 매립장), 분뇨처리, 하수처리, 자원회수, 발전소(원자력, 화력)	광역권 설치포함
도로·교통 시설 설치	교량, 광역도로 신설 및 확·포장, 고속화도로, 도시철도 연장	
공공시설 설치·운영	복지회관, 박물관, 기념탑, 홍보관, 도서관, 병원, 소방학교, 교도소, 레크리에이션센터, 운동장, 공연장, 환경기술센터, 지역정보센터	
지역경제·개발	관광, 판매유통, 산업개발, 에너지절약, 기술혁신, 해외시장개척, 외자유치, 경마장, 광역촬영장, 벤처조합, 문화유적관리, 관광개발, 경지정리, 카지노사업, 화물기지	관광홍보포함
교육 및 연구개발	공동운영, 광역개발(도시)계획수립, 시험, 연구원 공동운영, 교육시설 공동운영, 환경영향조사, 첨단기술산업네트워크	공무원 교육제외
친선교류	문화, 예술, 체육, 청소년, 국제교류, 지역교류협력	
물관리 및 환경보전	오염방지, 방역, 상수원비용분담, 광역상수도, 온천보전, 정수장, 오염측정망설치, 수질개선, 어업자원관리, 적조대응	
행사개최	이벤트, 지역축제, 체육행사(월드컵, 아시안게임, 체전), 뉴밀레니엄공동프로젝트, Expo 개최	
일반행정 및 재정	구역, 조직, 인사(교류, 전문가고용), 위탁교육, 관리, 경찰, 앰블런스, 화재공동감시·경보, 위험물긴급처리반, 공동구매(비품, 장비), 헬기공동임차, 버스시계 요금조정, 버스노선조정, 통합교통카드	

자료 : 한표환 외, 2002: 205.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지역주의에 의해 자발적인 합의와 협력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기존의 가용투자자재원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자원 산출모형

투자 가용자원 = 세입합계 - 필수적 세출경비(Ⅰ-Ⅱ)		
세입합계 (Ⅰ)	자체자원	- 지방세 - 세외수입
	의존자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기초) - 재정보전금(기초) - 국고보조금 - 시도비보조금(기초)
필수적 세출경비 (Ⅱ)	법정·의무적 경비	- 인건비 - 지방채상환비(채무부담행위 포함) - 예비비 중 기타(세세항 분류기준) - 보조사업비(지방비부담 포함)
	기타 필수적 경비	- 경상적 경비 - 계속사업비

자료 : 이창균·신두섭(2007).

대부분 지방세수입 등 자체재원에 의한 재정동원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사업에 대한 가용재원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폭은 매우 제약되어 있으며, 지방세 등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합인 세입총계에서 법정·의무적 경비인 경상경비와 채무상환비 등을 공제한 액수에 불과하다.

결국 광역경제권 개발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인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의 공동부담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자원의 배분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특별회계의 설립이라는 측면에서 판단한다면 다음과 같은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투자자원 조성의 효율성 측면이다. 이는 기존의 자원배분체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재정동원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에서부터 출발하여 재정투자 효과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국고보조금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행정비용 감축을 위하여 유사·중복사업의 통합 및 집중투자에 의한 재정자원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균특회계의 재편을 통한 재원, 지방교부세의 재원일부, 관련부처의 보조금 일부를 통해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

둘째, 투자재원 조성의 자율성 측면이다. 이는 가급적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재정동원수단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신장하고 재정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의 공동화 또는 공동세 신설 등을 통해 세출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전제로 여타의 각종 부담금을 지방재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방의 자주재원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이다.

## 2. 효율성 측면에서의 투자재원 확보방안

###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혁신 사업계정의 일부를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혁신 사업계정<sup>3)</sup>은 2007년 현재 약 1.5조원의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지역혁신체제(RIS) 및 전략산업 육성, 지방대학·지역R&D 지원 등의 사업에 지출되고 있다. 따라서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지역혁신 사업계정내 기존사업 중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을 재분류하고 통합가능하면 통합하여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지원이 확정된 기존 사업이 광역경제권 사업에 포함되어 재원을 광역경제권 특별회계에서 조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전략산업추진과 지역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들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가 어렵거나 추진체계의 혼선이 야기될 수도 있다(〈표 8〉와 〈표 9〉 참조).

예를 들어, 전라북도의 경우 자동차부품소재, 생물산업 등이 이미 광주, 전남지역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이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으로 포함될 경우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게 되어 전략사업과

3) 지역혁신사업계정의 세출은 ①지역혁신체제의 구축 및 활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②지역전략산업의 육성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③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④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⑤지역의 정보화의 촉진 및 정보통신의 진흥에 관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⑥공공기관, 기업 및 대학 등 연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용자 등 소요경비의 지원, ⑦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⑧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그밖에 지역혁신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등 소요경비의 지원으로 구성된다.

SOC사업들의 정상적인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윤석완, 2008).

〈표 8〉 전라북도 주요 전략산업 현황

유 형	총 사 업 비	주요사업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2008-2018년, 8년간)	8,932억원 (일반1,754, 균특 1,000, 지방비 2,109, 기타 4,069)	R&D 중심 클러스터 등 39개 클러스터 사업
첨단부품·소재 공급단지 조성 (2008-2012년, 5년간)	8615억원 (일반 2,894, 균특 1,686, 지방비 3,464, 기타 571)	복합소재 기술원 설립 등 28개 단위사업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신규(2008-2012년, 5년간)	2,400억원 (균특 1,500, 지방비 5,000, 기타 400) 국비지원계획: 1조 3천억원정도 (시도별 1,500억원)	자동차·기계 17개, 생물 9개, RFT 5개

〈표 9〉 지역별 주요 전략사업

지 역	전 략 산 업 내 용
전라북도	자동차부품, 기계산업, 생물산업, RFT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라남도	생물산업, 신소재산업, 조선산업
광 주	광산업, 전자산업, 자동차부품소재산업, 디자인 문화산업

## 2) 지방교부세 재원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해 지방교부세 재원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새정부가 공약사항으로 발표한 지방교부세 2% 인상분(2.6조원)이 대상이 되겠다. 즉,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의 19.24%에서 2% 인상하고 인상분의 재원을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재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는 보통교부세 중에서 현재 지역발전 기능이 있는 보통교부세의 도로보전부분, 균형재원인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의 일부 재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등을 광역권 특별회계 재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그 사용범위

와 용도가 제한되는 재원으로 전환할 경우, 재원배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현재 재원부족액의 충족율이 88%에 그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행정 수준 유지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에서의 복지수요 급증,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의 수요를 생각할 때 현재의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여도 기존의 재정수요에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중앙부처의 포괄보조금(Single Pot)

중앙부처의 보조금은 광역경제권 개발과 관련이 있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의 재정지원으로, 이른바 영국식 Single Pot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광역권 거버넌스의 핵심 기관은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으로 RDA는 1999년부터 중앙정부의 기업과 규제개혁부(Department of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이전의 무역상무부) 산하 기구로 9개 광역권에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RDA는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대행기관으로 6개의 정부부처에 의해 'Single Pot'이라는 포괄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이 재원으로 지역 재개발, 사회적 혁신, 서비스 개선 등 지역사회 발전 전반에 대해 관장하고 있으며 핵심 기능은 장기적인 지역경제발전전략을 기획·조정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영국의 RDA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광역경제권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려 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RDA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 할당된 예산을 자유롭게 쓰고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율적이지만, 지방분권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김은경, 2008).

그러나 관련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을 통합·조정하여 이를 포괄보조금화하여,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자율성측면의 투자재원 조달 방안

### 1) 국세의 지방이양 또는 세원의 공동이용

광역경제권의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국세의 지방

이양이나 세원의 공동이양을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기존의 논의에 의하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외에도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을 이용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이양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된 내용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화하여 세수의 20%, 또는 30%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된다면, 2007년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세입예산액 기준(41조 1,631억원)의 20%를 설정하면 약 8조 2,326억원의 규모이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라 지방세수가 8조 2,326억원이 증대되면 지방세 규모는 2007년 기준 38조 732억원에서 46조 3,058억원으로 약 20%가 증가한다.

한편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동세원화하여 각각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하여 도입하는 방안이다. 우선 소득세할 지방소득세는 2007년 소득세 세입 예산이 32조 7,807억원으로 소득세수의 20%를 재원으로 하면 약 6조 5,561억원의 소득할 지방세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2007년 기준으로 약 6조 5,561억원이 증대되면 지방세 규모는 38조 732억원에서 44조 6,293억원으로 약 17%가 증가할 것이다.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는 2007년 법인세 예산이 30조 4,957억원이기 때문에 법인세수의 20%를 재원으로 하여 도입하면, 약 6조 991억원의 세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세할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면 지방세수가 6조 991억원이 증대되어 지방세 규모는 44조 1,723억원으로 약 16% 증가할 것이다(기획재정부, 2008. 3).

또한 2005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형식적으로는 국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일부가 이원화되어 탄생되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지방세, 특히 기초자치단체(시·군·구)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결국 종합부동산세는 중앙의 정책목적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세원(부동산)을 중앙정부로 이전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이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7년 기준 종합부동산세의 규모는 2조 8,814억원으로 이를 지방세원화 하는 경우 약 7.5%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다.

이상과 같이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확충된다면 지방의 자주재원의 비율이 80%이상 제고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역경제권의 특별회계 재원으로 이러한 국세의 지방으로의 이양세원을 이용하게 된다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공동세원이 될 것이고, 이 세원에 의한 지방세수입의 일정부분(약 10%, 2.3조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세 세입으로 광역경제권 투자재원이 확보되는 경우에도 공동세 세입의 일정 비율이상

이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으로 전입되지 않거나, 지방교부세의 배분비율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는 자주재원 내지 일반재원의 규모가 축소되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2) 부담금

광역경제권 투자재원으로 광역경제권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등 개발이익의 일부를 광역경제권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담금은 대안적인 재원조달방안으로서 그 기본 성격은 투자대상사업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개인이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편익에 대응하는 특정재원을 동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곧 종래 조세 중심 재원조달(tax-based financing)에서 사용자중심 재원조달(user-based financing)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수도권에서 증가되는 각종 부담금을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담금으로는 환경개선 부담금,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과밀부담금 등이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다.

## 3) 민자유치 또는 민간자원의 활용

민자유치는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공급 및 운영에 민간을 참여시켜 민간부문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민자사업은 정부의 중장기 계획과 부합되고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민간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역시, 부족한 SOC 투자재원을 다변화하여 안정적인 적기에 시설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즉, 광역경제권의 SOC 재정투자규모에 대응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SOC 투자재원을 다변화하여 필요한 SOC 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의 재원조달과 함께 BTL (Build-Transfer-Lease)방식을 통한 SOC 투자재원의 조달은 물론 공기업 자체자금을 활용한 SOC 투자재원 조달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민간투자법 시행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정부공모방식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사업에서 민자유치가 가능한 분야 및 적용형태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지역개발사업에서 민자유치 활용분야

활용분야		활용가능성	구체적 적용형태
민자유치사업	도로, 철도, 경전철	- 교통량이 안정적이고 경쟁노선이 없는 프로젝트에 적합	교량, 터널 도시외곽순환도로
	터미널, 항만, 공항	- 과정보이용자와 장기구매계약이 가능한 경우 -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전용터미널 전용항만
	집단지너지, 가스공급	- 과점의 원료공급자 및 구매자와 장기공급 계약이 가능한 경우	산업단지내 시설 신도시내 시설
	폐기물처리, 하수도처리, 수도	- 안정적 수용과 독점적 공급이 가능 - 이용료 상향조정에 대한 주민반발로 수익성 저하가 우려될 경우 정부보조금으로 사업성을 보전할 수 있을 것	지자체 단위의 민관 합동법인
	국제회의 시설	- 부대시설 복합화로 수익성의 보전이 가능 -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주체(호텔, 기업체, 언론사)간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복합컨벤션 센터
	체육시설, 도시공원	- 투자규모에 비해 수익성이 적기 때문에 부대시설 복합화로 수익성의 보전이 가능	복합스타디움 도시어뮤즈먼트 파크
기타	자원개발	- 고위험 고수익	광물, 수자원 개발
	산업플랜트	- 과점공급자와 구매자가 있어서 장기계약으로 현금흐름의 안정이 가능한 프로젝트에 적합함	철강 플랜트 석유화학 콤비나이트
	지역특산물, 지역산업	- 지역연고기업, 주민, 지자체를 출자자로 하는 프로젝트 회사의 설립가능	특산물 사업
	도시개발	- 고위험 고수익 - 지역연고기업, 주민, 지자체를 출자자로 하는 프로젝트 회사의 설립 가능	주택단지 개발 도심 재개발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1998).

## V. 결론

지금까지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구상 및 이를 위한 가용재원 현황을 주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 관련 재원확보 방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성은 기존의 재원조달체계를 넘어서 신규재원 확보 및 특별회계의 설립을 통하여 다양한 투자재원의 원천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공감되었으며, 이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균특회계의 일부, 중앙부처의 재정지원, 지방교부세 일부, 국세의 지방이양, 수익자부담금(사용료, 수수료포함), 민자유치 등의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광역경제권 개발 사업의 특별회계라는 성격을 볼 때, 활용할 수 있는 투자재원은 균특회계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충을 통한 재원 조성, 중앙부처의 재정지원, 수익자 부담금, 민자유치 등이 가능하며, 교부세를 이용한 재원조성은 재원배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적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은 아직 인수위원회의 발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는 광역경제권 계획을 구체화할 때, 기본 원칙으로 지방분권의 강화라는 것을 천명하고 광역경제권 형성 계획 및 거버넌스 구조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경제권에 배분되는 모든 재원은 사업주체들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 강화가 광역경제권 개발의 중요한 성공요인이며,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자세를 유도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 참고문헌 ▶▶▶

- 강원발전연구원(2008. 3. 4),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전략과 강원도의 대응」,  
5+2 광역경제권과 강원도 개발전략의 모색 세미나, 한림대 국제회의실.  
경기개발연구원(1998), 「지방정부 투자재원 조달의 다각화 방안」, 연구보고서.  
기획예산처(2007),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 기획재정부(2008.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http://www.digitalbrain.go.kr>>.
- 김은경(2008), “광역경제권: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방안 ·”, 2008년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새정부의 출범과 지방재정의 과제」, 성신여자대학교.
- 대구경북연구원(2008. 2. 19), “광역경제권 구상의 지역적 의미”, 신정부 광역경제권 구상, 어떻게 볼 것인가 ·  
세미나,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
- 부울경(2007), 「동남권 산업연계 현황과 광역경제권 형성」,  
연구보고서, 부산발전연구원 · 울산발전연구원 · 경남발전연구원.
- 오마에 겐이치(박길부 역, 1996), 「국가의 종말」, 한국언론자료간행회.
- 윤석완(2008),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전략”, 지방재정학회 발표자료.
- 이동우(2006), “국토의 초광역경제권 구상과 정책과제”, 도시문제 제41권 455호.
- 이창균 · 신두섭(2007),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 산정 표준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선일보(2008. 1. 25), “7개 ‘광역경제권’으로 전국 재편”
- 한표환 · 김선기 · 김필두(2002),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활성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Scott, Allen F., John Agnew, Edward W. Soja, and Michael Stoprer(1999),  
“GLOBAL CITY-REGIONS”, Paper Presented at the Global City-Regions  
Conference in Los Angeles on October.

